

## 화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### 1. 심사경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'97. 3. 7 화순군수
- 나. 회부일자 : '97. 3. 7
- 다. 상정일자 : '97. 3. 18 (제5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)

### 2. 제안설명 요지

- 가. 제안자 : 기획감사실장 이병일
- 나. 제안사유
  - 화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 불합리한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고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.

#### 다. 주요내용

- 안 제2조 제2항의 "각 위원회 위원"을 "위원"으로
- 안 제2조 제2항의 "조례에 특별히 규정된"을 "규정된"으로
- 안 제3조의 "일비"를 "참석수당"으로
- 안 제13조 제2항 "가지는"을 → "갖는"으로 개정

### 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민병항)

- 본 조례 개정안은 화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 불합리한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고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전남도의 시군 공통 검토 안에 의거 화순군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 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.

### 4. 질의답변 요지

생략

### 5. 토론요지

생략

6. 심사결과

원안가결

첨부 : 화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1부. 끝.

## 화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97 - 28
------------	---------

제출년월일 : 1997. 3. 7

제출자 : 화순군수

### 1. 제안이유

- 화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 불합리한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고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.

### 2. 주요내용

- "위원(이하 "위원"이라 한다)을 → "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" 위원으로 개정 (안 제1조)
- "각위원회 위원"을 → "위원"으로 개정 (안 제2조 제2항)
- "조례에 특별히 규정된"을 → "규정된"으로 개정 (안 제2조 제2항)
- "일비"를 → "참석수당"으로 개정 (안 제3조)

## 화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위원(이하 "위원"이라 한다)"을 "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 위원"으로 한다.

제2조 제2항중 "각위원회 위원"을 "위원"으로 하고 동조 동항중 "조례에 특별히 규정된"을 "규정된"으로 한다.

제3조 제목 "일비"를 "참석수당"으로 하고 동조중 "일비를"을 "참석수당을"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 조문 대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화순군 각종 위원회 위원(이하 "위원"이라 한다)의 일비 및 여비(이하 "실비변상"이라 한다)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 (적용)</p> <p>① (생 략)</p> <p>② 각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.</p> <p>제3조 (일비)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제1조 (목적) -----  ----- 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 위원의 -----  -----  -----  ----- .</p> <p>제2조 (적용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위원의 -----  ----- ----- 규정된 -----  -----  ----- .</p> <p>제3조 (참석수당) -----  -----  ----- 참석수당을 ----- .</p>